

##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정 1998. 03. 01    개정 2013. 02. 28  
 개정 2014. 03. 31    개정 2019. 08. 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지도위원회 운영과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8명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3. 2. 28)

② 이 위원회의 행정 지원 실무는 학생복지처가 담당한다. (개정 2013. 2. 28)

③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직원이 담당한다. (개정 2013. 2. 28, 2014. 03. 31)

제3조 (기능) ① 이 위원회는 학생지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학생활동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지도한다.

1. 대의원회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승인 심의와 지도(개정 2019. 08. 26)
2. 대의원회 자율비 책정 및 지출에 관한 승인과 지도(개정 2019. 08. 26)
3. 학술, 예술, 체육, 봉사 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출판 및 인쇄에 관한 사항
5. 학생복지와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② 이 위원회는 학생장학위원회와 학생상벌위원회가 별도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다룰 경우 총장은 별도 위원을 4인 이내 임시 위촉하여 추가로 참여케 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학생지도에 관련된 대책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중요정책 결정에 있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 안건과 관련된 학부의 학부(과)장, 주임교수, 지도교수, 해당 학생을 출석케 하여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4. 03. 31)

③ 지도위원회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한다.

제5조 (회의결과 공개) 이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학생지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6조 (회의록) 학생복지처장은 모든 회의의 종료와 함께 회의록을 작성하며 차기 회의시 전회의록을 낭독하여 인준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2. 28)

제7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